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달청이 수행하는 일부 군수품 조달 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달청 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이관(안 제29조)

- 1) ‘20.7월 조달청장에게 급식, 피복 등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기로 합의하면서 품질보증 업무의 경우 조달청장의 업무 수행여건 마련을 위해 2년 간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기로 함.
- 2) ‘22.7월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품질보증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화를 통한 인력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표준화,”를 “표준화 및”으로, “관리 및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을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 ⑤ (생략)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u>표준화</u> ,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u>관리 및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u>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⑥ ----- ----- ----- --- <u>표준화</u> 및 ----- ----- <u>관리</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